

간호학과 실습교육 운영내규

제정 : 2012.03.01
개정 : 2015.03.01
개정 : 2019.07.10
개정 : 2020.03.01
개정 : 2021.03.01
개정 : 2021.12.01
개정 : 2022.12.01
개정 : 2023.02.15
개정 : 2023.10.16
개정 : 2024.03.01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 현장실습규정 및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기준에 의거하여 간호학과(이하 “학과” 라 한다)에서 실시하는 학생의 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개정 2019.07.10., 2020.03.01.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실습교과목의 운영은 실습실(교내) 실습, 자율실습, 임상실습으로 구분하며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실습실(교내) 실습 : 기본간호학 실습, 건강사정 및 실습, 통합실습, 시뮬레이션 실습 및 종합핵심간호술 등 교내 실습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실습을 의미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1.03.01., 2023.10.16.>
2. 자율실습 : 학생의 실무 능력 증진과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술기에 대한 자율적인 연습을 위해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운영하는 실습을 의미한다.
3. 임상실습 : 전공 교과목별로 적절한 임상실습 기관에서 실습하는 것을 의미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적용 대상은 전공교과목 중 실습 교과목 수강 학생이다.

제4조(실습교과목 및 학점) ① 실습교과목 및 학점은 해당 학생의 입학년도 교육과정표의 전공실습 교과목 및 학점으로 한다.

② 복학생 및 유급생의 실습교과목 및 학점은 현재 재학 중인 동일 학년의 입학

년도 학점에 준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③ 실습실(교내)실습은 1학점 당 2시간(주당), 임상실습은 1학점 당 3시간(주당)으로 하며 교내 시뮬레이션 실습인 경우 임상실습은 간호교육평가원의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될 경우 임상실습 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. <개정 2019.07.10., 2021.03.01.>

④ 임상실습 이수학점은 22학점 이상으로 이수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2.12.01.>

⑤ 국가 재난이나 위기상황으로 대면실습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기관(교육부 혹은 간호교육인증평가원)의 지침과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온라인 비대면 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. 다만, 온라인 비대면 실습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. <신설: 2021.03.01.> <개정 2021.12.01.>

1.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학생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근거 <신설 2021.03.01.>
2. 임상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한 근거 <신설 2021.03.01.>
3.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 성과를 관리한 근거 <신설 2021.03.01.>

제5조 (실습교육위원회) ① 학과 실습교육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간호학과 내에 실습교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구성은 간호학 실습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중 학과 교수회의에서 추천된 교수로 구성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③ 학과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위원장을 임명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④ 실습교육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과정 내의 실습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2. 실습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<개정 2019.07.10.>
 3. 실습 교과목 평가에 관한 사항
 4. 실습지도에 관한 사항 <신설 2019.07.10.>
 5. 실습교과목 학습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<신설 2019.07.10.>
 6. 실습 기자재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<신설 2023.10.16.>
 7. 학생 실습 준비 지원 사항(실습복, 지침서구성, 원거리 실습 등) <신설 2023.10.16.>
 8. 산업체 상호교류와 관련한 제반 사항(산업체 견학 등) <신설 2023.10.16.>
 9. 기타 실습에 관한 중요사항
-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신설 2019.07.10.> <개정 2021.12.01., 2024.03.01.>

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에 보고하고 필요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19.07.10.> <개정 2024.03.01.>

제2장 실습실(교내) 실습·자율실습

제1절 실습실(교내) 실습

제6조(교내실습운영) ① 실습인원은 실습 강좌 당 20명 이하로 배치한다.

② 실습지도교원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간호사 면허소지자
2.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<개정 2023.10.16.>
3. 임상경력 3년 이상

<개정 2021.03.01., 2021.12.01., 2022.12.01.>

제7조(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운영)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「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운영 매뉴얼」에 따른다. <신설 2022.12.01.>

제8조(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관리) ① 학과장은 실습실별 담당 교수를 지정한다.

② 실습실은 담당교수가 관리하며 실습실 사용일지를 작성한다<별지 1>.

③ 실습기자재는 실습 교육의 특성과 학생 수에 따른 실습기자재를 갖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내실습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기적으로 유지·관리한다. <개정 2021.03.01., 2022.12.01.>

제8조의2(실습실 학생 안전 및 인권) ① 실습 시 안전관리는 실습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고, 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. <신설: 2023.02.15.>

② 학과는 교내 실습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학교의 인권센터 규정에 준하여 관리한다. <신설: 2023.02.15., 2023.10.16.>

③ 학과는 실습 시 안전 강화 및 인권 보장을 위해 실습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. <신설: 2023.02.15.>

④ 학과는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사고보고 및 관리체계와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, 구성원 및 학생들에게 고지한다. <신설: 2023.02.15.>

⑤ 학과는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. <신설: 2023.02.15.>

제9조(실습기자재 관리) <삭제: 2022.12.01.>

제10조(실습지침서) ①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핵심간호술

을 반영하여 교과목별 학습성과를 설정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1.12.01., 2023.10.16.>

② 교과목별 학습성과가 반영된 학생용 및 지도자용 실습지침서를 작성하여 배부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1.12.01.>

제2절 자율 실습

제11조(자율실습대상) 자율실습은 해당 실습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1.12.01.>

제12조(자율실습실 운영 및 관리) ① 실습 인원과 시간은 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치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② 자율실습을 원하는 학생은 자율실습 신청서<별지 2>를 작성하고, 배정된 시간에 자율실습을 한 후 사용일지<별지 3>를 작성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③ 자율실습실은 학기 중에는 주당 4시간 이상을 개방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④ 자율실습은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의 책임 하에 위촉된 자율실습 지원 전담인력이 관리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⑤ 자율실습 지원 전담 인력의 자격은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제3장 임상실습

제1절 임상실습 기관 선정

제13조(실습기관 요건) 실습기관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기준을 준용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제14조(선정절차) 실습기관은 각 전공교과목 담당교수가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후, 학과 교수회에서 결정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제15조(협약) 학과는 실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문서화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제2절 임상실습 준비

제16조(실습기관 배정) ① 담당교수는 학생의 실습교과목에 해당되는 실습기관에

적정인원을 배정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② 임상실습은 실습단위당 최대 8명 이하로 배치한다.

제17조(공지) ① 담당교수는 실습기관에 학생의 명단 및 일정을 공지한다.

② 담당교수는 학생에게 실습 기관 및 일정, 실습내용, 지침물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지 한다.

제18조(실습지원) ① 본 대학교는 임상 실습 학생을 실습 현장에서 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. <개정 2020.03.01.>

② 학과는 학생의 원활한 실습을 위해 본 대학교와 협의하여 원거리 실습과 관련하여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. <신설 2019.07.10., 2023.10.16.>

제19조(임상실습지침서) 임상실습 담당교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핵심기본간호술을 반영하여 실습교과목별 학습성과를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습 내용과 평가방법과 기준·도구를 포함하여 학생용 및 지도자용 실습지침서를 작성하여 배부한다. <신설 2019.07.10.> <개정 2021.12.01.>

제20조(사전준비) ① 담당교수는 실습의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1.12.01.>

1. 관련 교과목의 이론 강의 내용과 실습내용의 상호연계성
2. 관련 교과목의 학습목표 및 학습성과, 관련 핵심간호술기
3. 임상 실습 지침 및 관련 내용(직장예절, 직업윤리 포함) <신설 2019.07.10.>
4. 실습 시 안전사고예방 및 비상연락체계 <개정 2019.07.10.>
5. 성추행, 성희롱 예방 및 대처 방법 <신설 2019.07.10.>
6. 기타 실습에 관한 주요사항

② 임상실습에 임하는 학생에게는 임상실습 전 인증평가를 실시하며, 임상실습 전 인증 평가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준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1.12.01., 2023.02.15.>

1. 임상실습 인증 평가 실시 최소 2주 전 해당 학생에게 공지한다. <개정 2021.12.01.>
2. 평가는 필기 및 술기를 평가하며, 평가결과가 학습성과 달성 ‘중’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습에 제한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9.07.10.>
3. 임상실습 전 인증 평가를 위한 자율실습은 4시간 이상 시행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제 3절 임상실습 운영

제21조(임상실습 시기) 임상실습은 해당 학년도 학기에 실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1. 교과목 이수관계상 학기 중에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
2. 임상실습 기관의 특성으로 인하여 방학 중 실시해야 하는 경우
3.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22조(임상실습지도자) ① 임상실습지도자는 실습교과목 담당 전임교원, 임상실습 지도교원, 임상실습 현장지도자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실습교과목의 임상실습지도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준한다.

1. 전임교원, 겸임 및 초빙교원, 연구원, 강사 <개정 2019.07.10., 2022.12.01.>
2.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, 임상경력 3년 이상 <개정 2022.12.01., 2023.10.16.>

③ 모든 실습단위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임상실습현장지도자 1명을 확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1.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학사학위 이상 <신설 2019.07.10.>
2. 임상경력 3년 이상 <신설 2019.07.10.>
3. 임상실습기관에 소속된 자 <신설 2022.12.01.>

제23조(임상실습지도) ① 임상실습지도자는 임상실습 지도를 담당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2.12.01.>

② 실습기관에서는 실습 지도를 위하여 임상실습현장지도자를 배정한다.

③ 임상실습지도교원을 위촉한 경우,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임상실습 지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, 실습기간 중 기관별로 1회 이상 임상실습지도를 관리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④ 임상실습지도교원은 실습지도 일지를 작성한다.

제24조(실습시간) ① 의료기관 임상실습은 낮 근무, 저녁 근무로 인원을 분배할 수 있으며, 실습기관의 여건에 따라 임상실습현장지도자와 협의 후 밤 근무로 배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7.10.>

② 주당 실습시간은 45시간(월요일-금요일, 1일 9시간 실습)을 원칙으로 하며, 실습기관의 여건에 따라 실습교과목 담당 교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③ 임상실습 결석은 원칙적으로 금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④ 유고결석(공결 포함)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임상실습지도교원과 임상실습현장지도자에게 알린다. <개정 2021.12.01., 2022.12.01.>

⑤ 유고결석(공결 포함)인정사유는 「학칙」 규정을 준용하며, 출석은 학칙의 출석

성적환산표에 따른다.<개정 2019.07.10., 2021.12.01., 2022.12.01.>

⑥ 해당 증빙서류를 임상실습지도교원에게 실습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출석인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2.12.01.>

⑦ 결석일수가 총 실습시간의 1/4일이상일 경우(2주 실습 중 2일 초과 결석, 3주 실습 중 3일 초과 결석-공휴일, 공결 포함)에는 해당 교과목 실습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. 단, 실습기관의 사정(예: 근로자의 날, 개원기념일 등) 및 대학의 사정(예: 학사일정)에 의하여 실습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는 실습교육위원회에서 정한다.<개정 2021.03.01., 2021.12.01., 2022.12.01.>

⑧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교수회에서 의결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2.12.01., 2023.10.16.>

제25조(기밀유지의무) ① 임상실습 학생은 임상실습 기간 중에 기관 또는 대상자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에 대하여는 학과 교수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, 그 결과에 따라 당해 교과목의 성적을 'F' 로 할 수 있다.

제26조 (일지작성 의무) ① 임상 실습 학생은 실습일지<별지 5>를 작성하고,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는다. <개정 2019.07.10., 2022.12.01.>

② 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실습 학생은 감점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27조 (실습 학생 기타 의무) ① 실습학생은 실습기관에서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실습에 임한다.

② 실습학생은 실습 전 실습교과목과 관련된 핵심간호술을 숙지하여 실습에 임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3.10.16.>

제28조(임상실습 무효) 실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실습을 무효로 하고 학점인정을 불허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실습기간 중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<개정 2020.03.01.>

2. 실습생이 지정 또는 허가받은 실습시간, 기간을 임의로 바꾸거나 거부 또는 중단한 경우 <개정 2021.12.01.>

3. 실습병원(기관)의 조업을 방해한 경우

4. 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지 않은 경우

5. 실습규정을 위반하거나 실습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

제29조(실습관련 회의) ① 임상실습 교육을 위해 실습협조와 관련된 간담회(사전협

조) 및 평가회, 임상실습현장지도자 회의는 해당실습 학기에 1회 이상 개최한다.
<개정 2019.07.10.>

② 실습회의는 전임교원, 임상실습지도교원, 실습기관의 간호부서장, 임상실습현장지도자 등이 참석한다.

제30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31조(기타) 구체적인 실습지침은 각 실습교과목별 실습지침서에 명시한 대로 따르며,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과 교수회를 통해 논의 후 결정한다.

제4절 학생 안전 및 인권 <개정 2020. 03. 01.>

제32조(안전관리 목적) 임상실습 시 안전관리는 실습학생의 건강 문제로 인한 임상실습 현장 내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고, 감염병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. <신설 2019.07.10.>

제33조(실습 보험) 본 대학교는 학생이 임상 실습 현장에서 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실습 시작 전에 학생 실습 보험에 가입한다. <신설 2019.07.10.> <개정 2020.03.01.>

제34조(검진 및 예방접종) ① 임상실습에 임하는 학생은 임상실습 시작 전 감염성 질환과 관련한 검사(혈액검사, X-Ray 검사 등)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과에 제출해야 한다. <신설 2019.07.10.>

② 임상실습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, 요구 사항에 대한 검진 및 예방접종을 확인하고, 결과를 통보한 후 임상실습에 임한다. <신설 2019.07.10.>

제34조의2(인권보장) ① 학과는 실습실(교내) 실습 및 임상실습 전반에 대한 학생 인권보장을 위해 학교의 인권센터규정에 준하여 관리한다. <신설 2020.03.01.> <개정 2021.12.01., 2023.10.16.>

② 학과는 임상 실습 시 학생 인권보장을 위해 임상실습 전 실습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교육을 실시하고,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학생인권 보장 관련 규정에 준하여 관리한다. <신설 2020.03.01.>

제35조(사고 대책) ① 학과는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사고 보고 및 관리체계와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, 구성원 및 학생들에게 고지한다. <신설 2019.07.10.> <개정 2021.12.01.>

② 학생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. <신설 2019.07.10.>

제 5절 임상실습 평가

제36조(학습성과 관리) 실습교과목 전임교원은 해당 교과목이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성과와 평가 방법 및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임상실습지도교원 및 임상실습현장지도자 등과 협의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제37조(평가방법) 실습교과목 전임교원은 임상실습 완료 후에 지침서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. <신설 2019.07.10.>

제38조 <삭제 2019.07.10.>

부 칙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3-5-4 간호학과 실습교육 운영내규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